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가단5329514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피고B

변론 종결 2021. 6. 25.

판결 선고 2021. 7. 23.

##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1.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475,71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475,7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 1)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E 주식회사에 순차로 양도되었다.
- 2) E 주식회사는 2016.경 C을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8637호로 'C은 E 주식회사에게 4,313,223원 및 그 중 2,490,550원에 대하여 2005.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10. 27. 확정되었다.
- 3) 원고는 2019. 8. 8.경 E 주식회사(F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로부터 위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20. 3.경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상속지분 3/9) 및 피고, C을 비롯한 3명의 자녀들(각 상속지분 2/9)이 있었다.
- 2) 피고와 C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2020. 1. 29.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0. 3.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피고는 2020. 3. 15.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5,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20. 3.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0502호로 근저당권자 I조합,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22,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 4. 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다.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9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항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위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731,771원을 변제공탁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

### 나. 판단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2020.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40575호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0,731,771원의 한도로 취소한다. 피고는 J에게 30,731,7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사실, 피고가 2020. 7. 22. J를 피공탁자로 하여 30,731,771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 판결의 채권자인 J가 위 판결에 의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이 사건 원고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데, 피고가 위 선행 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을 변제공탁한 사실만으로 '선행 판결에 의한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즉, J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여 현실적으로 위 돈을 지급받아야만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위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가액배상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20. 3. 15.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0. 3. 19.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C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2020. 3. 15. H에게 155,000,000원에 매도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 역시 155,000,000원으로 추인할 수 있으며(피고도 위 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 당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2,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위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최소 29,533,333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55,000,000원 - 채권최고액

22,100,000원4) ) × C의 상속지분 2/9,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이 된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3,759,026원[= 4,313,223원 + {2,490,550원 × 연 24% × (15년 + 293일/365일)}]5)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되, 위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13,475,7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기로 한다.

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3,475,71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475,7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범준**

별지

1) 원고는 청구취지 중 사해행위 취소청구 부분을 가액배상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가액배상액인 13,475,71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행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으나, 이를 본안전 항변으로 선행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한편,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등 참조).

4)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보아 계산하기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에 미달하여 위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하므로, 설령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채권최고액에 미달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은 달라지지 않는다.